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2월 24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2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3월 4일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개정으로 구미시 지방세심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 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의 폐지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2010.12.31)-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신 정 순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구미시 지방세심의 위원회(2010.12.31 구성)의 심의·의결 사항에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원활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